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(담당자 연락처 ☎ 044-204-3904) 30128

> 서울 종로구 수송동 000 ㅇㅇ공익재단 귀중 00000



「주기적 감사인 지정」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안내

안녕하십니까?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, **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**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2022사업연도부터 「**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**」가 시행되었습니다.

「**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**」는 공익법인 연속하는 **4개 사업연도**의 감사인을 **자유선임** 한 후, 다음 **2개 사업연도**는 **국세청장**이 **지정**하는 **감사인**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제도시행 후, 두 번째인 **2023사업연도**에 대한 **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**(12월 결산법인)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
'22.9.1.~9.14. **지정 기초자료 제출**(공익법인→국세청)

~'22.10.18.
지정감사인
예정통지
(국세청→공익법인,)

~'22.11.1.

□ 예정통지
□견제출
(공익법인→국세청)

~'22.11.15.

□ 지정감사인
확정통지
(국세청→공익법인)

~'22.11.29. 감사계약 체결 (확정통지 후 2주내)

귀 공익법인은 2021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, **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**를 **2022.9.1.~9.14.까지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정 기초자료	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35호 서식
제출방법	(전자제출) 인터넷 「홈택스(www.hometax.go.kr)」로 제출 ☞ 홈택스(공인인증서 등 로그인) >신청/제출 > 신청업무 > 주기적 감사인 신청 >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
	(우편제출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(정진원)

[온라인 설명회 개최]「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」를 안내하고, 지정기초자료 작성·제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('22.8.22.14:00)할 예정입니다. ☞ 참가신청 등 세부내용은 [뒷면] 참조

첨부1

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(요약)

□ (제도 개요)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,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자유선임 한 후 2개 사업연도는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(상속세 및 증여세법 §50④)

주기적 감사인 지정 일정('23.12월결산 공익법인)

자유선임 (4개 사업연도)			주기적 지정		
′19사업연도	′20사업연도	′21사업연도	′22사업연도	'23사업연도 (감사대상연도)	′24사업연도

대상한단 <u>감사인지정</u> (9~11월)

감사실시

- □ (지정 대상) 202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
- □ (분산 지정) 국세청은 매 사업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,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 가능

['23.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절차]

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§43의2)

구 분	세 부 내 용	관련서식
기초자료 제출	지정대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상증규칙 별지35호
예정통지	국세청장은 지정기준일(11.15) 4주전까지 지정 예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	-
의견제출	공익법인은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(11.1까지)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	상 증규 칙 별지28호의2
확정통지	국세청장은 지정기준일(11.15)까지 지정감사인을 확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	-
감사계약 체결	공익법인은 지정기준일(11.15)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	-
재지정 요청	공익법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지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 ①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내 감사계약 미체결 ②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	상 증규 칙 별지28호의3

*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공익법인 > 「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」를 통해 관련서식 다운로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첨부2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

ㅁ 익시	. 2022 0 22	/원 \ 1 1・1・1 1	 15:00 (약60분)
□ 2^	. 2022.0.22.	、 当) 14.00~!	」3.UU (当60元)

□ 대상 : 공익법인 실무담당자

□ 진행방법 : 웹엑스(Webex)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화상교육

① 온라인 교육을 위해 웹엑스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(무료) 하시기 바랍니다.

컴퓨터(PC) 수강	스마트폰 수강
www.Webex.com → Webex 다운로드(보통 64비트 설치)	플레이스토어 → Webex Meetings 프로그램 설치

- ②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(휴대전화번호)로 **인터넷 주소**URL 및 **미팅번호**를 전송할 예정(선택하여 접속)
- □ 주요내용 : 「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」설명,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, 주요 Q&A 등
- □ 참가신청 : 8.19(금)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로 제출(jung6573@nts.go.kr)

[참가문의]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(☎044-204-3904)

공익법인명	휴대전화번호	
참가자 성명	이메일	